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60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3.

발의자 : 강훈식 · 정춘숙 · 정세균
김영진 · 윤후덕 · 이원욱
안호영 · 임종성 · 한정애
윤일규 · 신창현 · 김종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,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인구구조 변화,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(2020년~2040년)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, 기본방향, 목표 및 원칙, 전략의 수립 등에 있어 최상위 계획지침으로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조사-진단-환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,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

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- 나. 국토교통부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다.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(안 제25조의2 신설)
- 1)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함.
 - 2)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국토진단 및 환류 근거 마련(안 제25조의3 신설)

- 1)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(이하 “국토진단”이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- 2)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.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지속가능성”을 “현황 및 지속가능성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국민의 의견 청취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 중 “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,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”을 “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조부터 제5조까지”를 “제2조부터 제4조까지, 제4조의2 및 제5조”로, “기본이념”을 “기본 이념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”을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인구, 경제, 사회, 문화, 교통, 환경, 토지이용, 그 밖

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(이하 “국토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인구, 경제, 사회, 문화, 교통, 환경, 토지이용 등 국토의 현황에 관한 사항
2. 제5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항
3. 국토종합계획과 주요 국토정책의 달성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4. 국토 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5조제2항 전단 중 “조사”를 “국토조사”로, “제1항의 조사”를 “국토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2(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제25조의3에 따른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국토모니터링”이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

획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4장에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국토진단 및 환류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(이하 “국토진단”이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수립 및 국토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
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국민의 의견 청취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
등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
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
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
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
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돋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
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8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) ①
국토교통부장관, 중앙행정기관의
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
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
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
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
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
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
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, 중앙행정기
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
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
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

제19조의2(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·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,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 (이하 “국토계획평가”라 한다) 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

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2(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) ① -----

-----국토계획이
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
수립되었는지 여부 등을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

-----.

② -----제2조부터 제4조까지, 제4조의2 및 제5조-----기본 이념 등-----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

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 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④ (생략)

<신설>

-----국토조사-----
-----.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25조의2(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제25조의3에 따른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국토모니터링”이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

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3(국토진단 및 환류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

<신 설>

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
요한 분석 및 평가(이하 “국토
진단”이라 한다)를 실시할 수
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
수립 및 국토정책 추진의 효과
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진단 결
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
제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
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국
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이를 반
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
다.